진 주 시

공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683호 2020. 7. 8.(수)

조 례

진주시 조례 제1589호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2
진주시 조례 제1590호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7
진주시 조례 제1591호 진주시청 옵·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진주시 조례 제1592호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13
진주시 조례 제1593호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진주시 조례 제1594호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진주시 조례 제1595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진주시 조례 제1596호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진주시 조례 제1597호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52
진주시 조례 제1598호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57
진주시 조례 제1599호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진주시 조례 제1600호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진주시 조례 제1601호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1
진주시 조례 제1602호 진주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00
진주시 조례 제1603호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진주시 조례 제1604호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진주시 조례 제1605호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진주시 조례 제1606호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8
진주시 조례 제1607호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진주시 조례 제1608호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진주시의회 조례 제2020-2호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146

규 칙

진주시 규칙 제761호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1
진주시 규칙 제762호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74
진주시 규칙 제763호 진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85
진주시 규칙 제764호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202
진주시 규칙 제765호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3
진주시의회 규칙 제2020-1호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210

회 람										

발행 : 진주시 편집 - 공보관(749-8069, 행정 8069)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89호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를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공무원 등”으로, “포상금 등”을 “포상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다목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신고의 의무 및 방법)”을 “(신고방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포상금 등 지급)”을 “(포상금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같은 항부터 제3항까지 중 “포상금 등”을 각각 “포상금”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포상금 등의 지급제외)”를 “(포상금의 지급제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포상금 등”을 “포상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관련부서”를 “그 밖의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포상금 등”을 “포상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포상금 등의 환수)”를 “(포상금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포상금 등을”을 “포상금을”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을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으로 한다.

별지서식 중 “「진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를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부조리신고포상금등지급조례	진주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절차와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포상금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무원 등---------- 포상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이란 진주시 소속 공무원과 상근인력(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이하 “포상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다.「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신 설>	2.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다. ---------- ----- 공무원 등---------- ----------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② (생 략)	제3조(신고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포상금 등 지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 ---------- 따른 ---------- ---------- 포상금---------- ---.
② 포상금 등 지급액의 상한선은 1천만원으로 한다.	② 포상금 ---------- ------.
③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 포상금---------- ---------- ----------.
제12조(포상금 등의 지급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제외) ------ 각 호-- ---------- 포상금--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2. ---------- 그 밖의 부서 ----------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포상금 등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 포상금 ---------- ----------
제13조(포상금 등의 환수) 포상금 등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의 환수) 포상금을 ---------- ----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 ----------.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90호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진주시”로, “진주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진주시명예시민증”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조에 따라”로,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사람에게 진주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의"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자가"를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로, "권리행사와 제21조의 의무부담을"을 "권리행사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제1항에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한 진주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진주시---------- ---------- ---- 진주시명예시민증 ---------- ---------- ----------.
제2조(수여대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수여대상) ---------- ------ 제1조에 따라 ---------- ---------- 사람에게 진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
1. 외국인 중 시정발전에 공로가 있고 시민과 외국인주민의 귀감이 되는 자	1. ---------- ---------- 사람
2. 내,외국인 중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	2. ---------- ---------- --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 사람
3.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생 략)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는 진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따른 ---------- ----------.
제4조(수여방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제4조(수여방법) ①제2조에 따라 --------- ---------- 사람에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명서를 발급,교부하거나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 사람----------.
제5조(권리의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 증서를 받은 자가 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의 권리행사와 제21조의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권리의무) 제4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 - 권리행사를 ----------.
제6조(예우 및 관리) ①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민에 준하여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관리) ①---------- 사람---------- --.
②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시내의 공원 또는 시설을 관람하고자 할 경우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사람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취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취소) ①제4조제1항에 따라 ---------- 사람이 ----------.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일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91호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0.7.8.>

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구 분	소 재 지	비 고
진 주 시 청	진주시 동진로 155	
문 산 읍 사 무 소	진주시 문산읍 동부로587번길 12	
내 동 면 사 무 소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389	
정 촌 면 사 무 소	진주시 정촌면 정촌로 57	
금 곡 면 사 무 소	진주시 금곡면 월아산로 140	
진 성 면 사 무 소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 1329	
일 반 성 면 사 무 소	진주시 일반성면 동부로1959번길 2	
이 반 성 면 사 무 소	진주시 이반성면 오봉산로 719	
사 봉 면 사 무 소	진주시 사봉면 사군로 105	
지 수 면 사 무 소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483	
대 곡 면 사 무 소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1094	
금 산 면 사 무 소	진주시 금산면 금산로 107	
집 현 면 사 무 소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697	
미 천 면 사 무 소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731	
명 석 면 사 무 소	진주시 명석면 광제산로 37	
대 평 면 사 무 소	진주시 대평면 한들길 44	
수 곡 면 사 무 소	진주시 수곡면 곤수로 972	
천전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망경남길44번길 22	
성북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진주대로1143번길 3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진주대로1032번길 14	
상봉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창렬로162번길 9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동진로 189	
하대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모덕로 305	
상평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솔밭로80번길 18	
초장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초장로14번길 14	
평거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평거로40번길 5	
신안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진양호로 360	
이현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평거로 287	
판문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새평거로 55	
가호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가좌길74번길 9	
충무공동행정복지센터	진주시 충의로 145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92호

진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면·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진주시○○ 읍·면·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권한을 가진다.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

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공개 모집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3.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지방의회 의원

2.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된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호

별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면·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통장 연합회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 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한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

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⑨ 위원의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⑩ 시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존의 위원이 연임을 할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기 내에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1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면·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시기, 대상, 범위 등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며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 자치회장이 소집하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읍·면·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읍·면·동의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4.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5.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면·동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17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역 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읍·면·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운영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면·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거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3조(감독)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 결과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보험)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장이 정하는 읍·면·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되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해당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2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해당 읍·면·동에 주민자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읍·면·동 위원회는 주민자치회로 통합되며 위원회는 해산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93호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및 동주민센터,”를 “및”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및 동주민센터,”를 “및”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6항 본문 중 “자문단을”을 “자문단 또는 지원단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문단 구성 시”를 “자문단 또는 지원단을 구성할 때에는”으로, “자문단”을 “구성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주민자치 박람회”를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 체육대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설치 등) ①---------- --- 및 ---------- ----------.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생략)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및 --------- ---------- ------ 그 밖에 ---------- ---------- ---------- ----------.
제7조 (운영) ① ~ ⑤ (생 략)	제7조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단, 자문단 구성시 특정 성별이 자문단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 ---------- ---------- ---------- 자문단 또는 지원단을 ------.---- 자문단 또는 지원단을 구성할 때에는 ---------- 구성원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개인, 기관,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⑧ ---------- ---------- ---------- ----------.
1. 주민자치 박람회 등 행사	1. 주민자치박람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체육대회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20조 (위촉해제) (생 략)	제20조 (위촉해제)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②----------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94호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① 시장은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촉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산업의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항공우주·뿌리·세라믹·연구소의 유치로 산업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이전(기존 사업장 폐쇄·유

지)하는 경우. 단, 관내에서 관내이전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2. 기업이 관내에 기존사업장을 유지하고 관내로 일부 이전하는 경우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진주시 전략산업 업종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제조 및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으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에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제26조의2(투자기업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규정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의2(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① 시장은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촉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략산업의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항공우주·뿌리·세라믹·연구소의 유치로 산업 발전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이전(기존 사업장 폐쇄·유지)하는 경우. 단, 관내에서 관내이전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해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 2. 기업이 관내에 기존사업장을 유지하고 관내로 일부 이전하는 경우 3. 기업이 관내에서 창업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진주시 전략산업 업종 및 지원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투자기업 중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큰 중규모 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조 및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신 설>	제24조의2(임대용지 공급) 시장은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기업에 산업용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2(투자기업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잉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95호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주관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남녀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휴관하지 아니한다”를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로 하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미술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24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홍보)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4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운영) ① (생 략)	제5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임대, 교육, 체험, 전시,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미술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사업을 주관한다.
<신 설>	제5조의2(편의시설 등) ①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음식점 2. 기념품판매점 3. 남녀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등) ① 미술관은 연중 매일 개관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개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4. ---------- ----------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등록증 제시자(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중 등록증 제시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제시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 제시자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등록증 제시자 10.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1.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과 그 배우자 12. 「진주시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주시민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 13. 「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14.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서 연간 봉사활동실적이 40시간 이상인 사람 15.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며 관람료 1회에 한정한다. 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도시는 별표 4와 같다. 2. 세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면기간은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만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② (생 략)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③ ---------- 미술관업무 담당 국장----------.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0조(회의) ① (생 략)	제2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 ---------- ----------.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강사 초빙 등) ① 시장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5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미술관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홍보) 시장은 미술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생 략)	제27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별표 1] <개정 2020. 7. 8.>

미술관 관람료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관람료(원)		비 고
	개인	단체(20인 이상)	
어른	2,000	1,500	
청소년 및 군인	1,000	800	
어린이	500	400	

1.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군인”이란 하사 이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7조제2항에 따라 대관자가 작품을 전시하는 경우 별도 책정할 수 있다.

[별표 1의2] <신설 2020. 7. 8.>

미술관 관람료 감면(제8조제1항 관련)

【 관람료 면제 】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4.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며 관람료 1회로 한정한다.
15.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
16. 「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17.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18.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19.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20.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람료 감경(50%) 】

1.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경 받을 수 있으며, 해당도시는 별표 4와 같다.
2.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3.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4.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별표 4] <개정 2020. 7. 8.>

관람료 감경 도시(제8조제1항, 별표 1의2 관련)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시·군·구)
경상남도 사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남해군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광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기도 양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전라남도 여수시		경기도 여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파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북도 충주시	대구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나주시	울산광역시 중구
		전라북도 전주시	부산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경주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상북도 상주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상북도 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96호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을 "(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단서 중 “그 다음날 휴관한다.”를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홍보) 시장은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신설 2020. 7. 8.>

전시관 관람료 감면(제12조제1항 관련)

【 관람료 면제 】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4.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며 관람료 1회로 한정한다.
15.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
16. 「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17.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18.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19.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20.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람료 감경(50%) 】

1.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경 받을 수 있으며, 해당도시는 별표 2와 같다.
2.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3.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4.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5.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별표 2] <개정 2020. 7. 8.>

관람료 감경 도시(제12조제1항, 별표 1의2 관련)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시·군·구)
경상남도 사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남해군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광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기도 양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전라남도 여수시		경기도 여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파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북도 충주시	대구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나주시	울산광역시 중구
		전라북도 전주시	부산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경주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상북도 상주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상북도 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리와 운영) ① ~ ③ (생 략)	제5조(관리와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생략)	제7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시관의 홍보 및 모니터링을 위해 시민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및 시민서포터즈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① (생 략)	제8조(운영시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시관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9조(휴관일) ①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제9조(휴관일)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휴관한다.	4. ---------. ---------- ---------- ----------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12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등록증 제시자(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등록증 제시자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제시자 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 제시자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등록증 제시자 11.「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과 그 배우자 12.「진주시 장기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주시민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 13.「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14.「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서 연간 봉사활동실적이 40시간 이상인 사람 15.「공직선거법」또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며 관람료 1회에 한정한다. 1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7.「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18.「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도시는 별표 2와 같다. 2.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면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홍보) 전시관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2.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7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97호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매년 7월1일부터 7월 7일까지를”을 “1년중 1주간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 교육, 캠페인 시 홍보물품과 홍보전단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을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양성평등 정책업무"를 "양성평등정책업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8조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존속 필요성"을 "존치 필요성"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중 "사업"을 "사업의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생 략)	제4조(성별영향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제5조(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① ~ ③ (생략)	제5조(양성평등문화 확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양성평등주간으로 하고.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④ ---------- 1년 중 1주간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시장은 양성평등 문화 조성과 의식 확산을 위한 행사, 교육, 캠페인 시 홍보물품과 홍보전단 등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①·② (생략)	제6조(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여성의 성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제9조(구성) ① (생 략)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 예산업무 담당국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 양성평등정책업무 ----------.
제1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존속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존치 필요성----------.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2. ---------- 업무담당팀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 ------ “위원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용도 및 지원대상)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	제23조(용도 및 지원대상)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여성인재 관리·육성을 위한 사업	4. ---------- 사업의 지원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98호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 “위기”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광범위하게 발생

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시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또는 건물 등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 위기극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아동수당법」 제2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4.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6.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른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수당 수급권자
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8.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시민

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0.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11. 재난으로 실직·휴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

12. 휴업, 시설폐쇄, 임대료 인하 등 재난 위기극복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

13. 개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

1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제5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재난의 종류·기간, 피해의 범위 및 내용, 재난으로 시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 범위 등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진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환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599호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9호 중 “특별교통수단”을 각각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특별교통수단”을 각각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8조 및 제19조로 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를 각각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5까지로 한다.

제5장에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본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특별교통수단”을 각각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8조(종전의 제15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으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6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각각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9조의2(종전의 제16조의2)의 제목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제6항 및 제7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각각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9조의3(종전의 제16조의3)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

교통수단”을 각각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9조의4(종전의 제16조의4)의 제목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을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19조의5(종전의 제16조의5)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등”으로 한다.

제5장에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삽입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7. 8.>

[앞쪽]

접수 번호			결재	담당자	팀 장	과 장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장애(장애유형 : , 장애정도 :)				
		□65세 이상 고령자		□기타( )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 보호자 /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 /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 없음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과 그 기간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 약 서

본인은「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8.>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 ○○○○○-
수　　신 : ○○○ 귀하(진주시　○○로　○○　　)

「진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청인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을 다음과 같이 (승인/불승인)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용대상자와의 관계	
이용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애 유 형		□ 영구장애 (　　장애)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		□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					

년　　월　　일

진주시장(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진주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특별교통수단등-----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3. ---------- ---------- 사람------- ----------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특별교통수단등----------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장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4. 특별교통수단등----------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저상버스 운전자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9. ---------- 특별교통수단등 ----------
10.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이동지원센터의 기능) ----------.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1. 특별교통수단등----------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2. 특별교통수단등 ----------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의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등 ----------
6.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	6. -------- 특별교통수단등----------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5장 특별교통수단	제5장 특별교통수단등
<신 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감안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써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① 특별교통수단등----------.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24시간제로 운영하도록 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특별교통수단은 즉시 신청,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3. 특별교통수단등----------.
4.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자의 확인 후 지원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4. 특별교통수단등----------.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특별교통수단등----------.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시외버스는 해당구간 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특별교통수단등----------.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의2(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특별교통수단등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특별교통수단등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동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⑥ 특별교통수단등 ---------- ---------- ---------- ---------- ---------- ----------.
⑦ 시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⑦ ---- 특별교통수단등 ---------- ---------- ---------- ----------.
제16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1.·2. (생 략)	제19조의3(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 특별교통수단등 ---------- ---------- - 특별교통수단등----------. 1.·2. (현행과 같음)
제16조의4(특별교통수단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제16조의3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의4(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① 특별교통수단등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5(교육)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9조의5(교육) ① ----- 특별교통수단등----------.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삭 제>
제18조 (생 략)	제21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19조 (생 략)	제22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신 설>	제6장 보칙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600호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을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및 농작물”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

해를 입은 자와 농업·임업상"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야생동물에 의해"를 "야생동물로 인해"로, "입은"을 "입었거나 사망한"으로 한다.

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작물"을 "농작물등의"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원은"을 "지원대상은"으로, "농작물"을 "농작물등의"로, "농업인"을 "농업인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등에 의해"를 "등으로"로, "농업인 등"을 "농업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원신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업인"을 "농업인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세부기준

및 지원절차는 세부규정을 따른다"로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진주시 관할구역 내에서 재배된 농작물등에 해당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3.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야생동물에 의"를 "야생동물로 인"으로,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

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10조의 제목 “(피해액 보상기준)”을 “(피해액 산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에 별표에 따른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농작물의”를 “농작물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 : 80퍼센트
2. 최초 피해발생시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 70퍼센트
3. 매년 반복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 40퍼센트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을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로, “피해현장조사”를 “세부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

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사항을"을 "세부규정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로 한다.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산물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상속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을"을 "세부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피해농작물"을 "피해 농작물등"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보칙"으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시장은 관내 농작물등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와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적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규정을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신설 2020. 7. 8.>

작물별 피해액 산정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과 수	농 작 물
피해면적	○ **표준 재식면적** ※ 일반적인 품종이 아닐 경우에는 1주당 실제 재식면적 산정(측량)	○ **가로 × 세로** ※ 측량이 불가할 경우에는 달관조사에 의하여 산출
피해율 적용기준	○ **피해정도에 따른 피해율** ▪ 피해과수의 달관조사에 의하여 10~100%까지 차등 적용 ※ 10% 미만의 피해는 피해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 ○ **성장단계별 피해율** ▪ 5년생 이상 : 100% ▪ 3년생 이상 ~ 5년생 미만 : 90% ▪ 3년생 미만 : 80% ※ 피해정도와 성장단계별 피해율 동시적용	○ **성장단계별 피해율** ▪ 성장단계 : 90% ▪ 수확단계 : 100% ▪ 대파 또는 보식가능단계 : 50%
피해액 산정기초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과수가 2주 이상일 경우에는 피해과수별로 피해액을 산출하여 합산	○ **피해면적 × 피해율 × 단위면적당 소득액**

비고

1. 피해면적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논, 밭작물의 경우 실제 경작지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수는 다음과 같이 면적을 산정한다

1) 배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35제곱미터, Y자형 밀식은 17제곱미터 적용

2) 사과 : 식재방법이 일반형은 1주당 8제곱미터, 밀식형은 5제곱미터 적용

3) 복숭아 : 식재방법이 자연형은 1주당 41제곱미터, Y자 밀식형은 23제곱미터

4) 단감 : 1주당 18제곱미터 적용

5) 포도 : 1주당 8제곱미터 적용

6) 자두 : 1주당 62제곱미터 적용

7) 매실 : 1주당 55제곱미터 적용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진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상 ----------,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업·임업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을 말한다.
4.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상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4. ---------- 야생동물로 인해 ----------입었거나 사망한-------.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 농작물등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주시 관할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 농작물등의 ---------- ---------- 농업인등----------. ---------- 등으로 ---------- ---------- 농업인등----------.
<신 설>	② 시장은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할구역 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
제6조(지원신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① (생 략)	제7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율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업인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한다.	② ---------- ---------- 농업인등의 ---------- ----------.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 세부기준 및 지원절차는 세부규정을 따른다.
제8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3장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제9조(피해보상 대상)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진주시 관할구역내에서 재배된 농작물만 해당된다.	제9조(피해보상 대상) 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진주시 관할구역 내에서 재배된 농작물등에 해당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3.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야생동물로 인----------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단서 신설>	2. ---------- - 경우. 다만,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10조(피해액 보상기준) 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농작물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에 별표에 따른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신 설>	②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등의 ----------.
② 농작물의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을 경우 : 80퍼센트 2. 최초 피해발생시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 70퍼센트 3. 매년 반복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이 없을 경우 : 40퍼센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피해신고)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5일이내에 피해발생지역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상속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신고) 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농산물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 또는 치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상속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이·통장 또는 반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피해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 세부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
③ 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해 피해액을 산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부규정 별지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제13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보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을 받아 피해신고 해당 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이전 수확된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7월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피해보상금 지급) ① ------- 세부규정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 --피해 농작물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장 야생동물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4장 보칙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피해예방시설 설치 시설계획안의 평가 3.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액 심의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시장은 관내 농작물등을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필요한 경비와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교통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진주시의회 의원,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이 된다.	제15조(적용)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규정을 따른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601호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가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진주시가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

제품”으로, “시”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대하여”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의거”를 “따라”로,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을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로, “포함되어야”를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같은 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등급제품”을 “I 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제11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2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을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친환경상품 정보제공)”을 “(녹색제품 정보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및 제3항 중 “친환경상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16조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진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시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진주시가 녹색제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이하 “상품”이라 한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친환경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나 생산시설이 시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녹색제품----------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
3.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녹색제품----------.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대하여 ----------.
제5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 녹색제품 ---------- 녹색제품 ----------.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1. 녹색제품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2. 녹색제품 ----------
3. 관내 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3. ---------- 녹색제품 ----------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상품 사업자 지원	4. --- 녹색제품 ----------
5. 시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5. ---- 녹색제품 ----------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거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 따라 ---------- 녹색제품 ----------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
②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녹색제품 ----------.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1. 녹색제품 ---------- 녹색제품 ---------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녹색제품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 --- 시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 -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1. 녹색제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제8조(구매의무) ---------- 녹색제품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9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구매예외) ① ---------- ---------- ---------- 녹색제품---------- ----------.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1. ---------- 녹색제품----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친환경상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3. 녹색제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친환경상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5. 녹색제품---------- 해당 ----------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상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녹색제품 ---------- 녹색제품 ----------.
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4. ---------- I 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5. 제12조에 따른 ----------
제11조(교육) 시장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구매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 녹색제품 ----------.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 녹색제품 ----------.

제13조(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 녹색제품----------.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녹색제품----------.
제14조(친환경상품 정보제공)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 녹색제품----------.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 ---- 녹색제품----------.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의 장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② ---------- 녹색제품 ----------.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 녹색제품----------.
제16조(포상) 시장은 친환경상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 녹색제품----------.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602호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란「도로법」제11조”를 “란「도로법」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의해”를 “방법으로”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원인자부담금)”을 “(비용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거하고 원인자”를 “제거하고”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부담금의 강제징수)”를 “(부담금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제21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후단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로수”란「도로법」제11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2. ------란「도로법」제10조----------.
3. “원인자”란 관리청이외의 자가 가로수를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를 하기위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1.12.20.>	<삭 제>
4.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의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 또는 가지치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삭 제>
제4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관리청외의 자(“원인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 (가지치기) ①·② (생 략)	제12조 (가지치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인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 ---------- ---------- ---------- 방법으로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 (원인자부담금) ①·② (생 략)	제15조 (비용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다.	③ ---------- ---------- ---------- ---------- ---------- 제거하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 략)	제16조 (부담금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18조 (점검 등) ① (생 략)	제18조 (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청은 별표 1에 의한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제19조 (재해대비 조치) 관리청은 폭풍 등의 재해로 인한 가로수 손상으로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재해대비 조치) ----------.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다른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한 지주목 보강, 재해예방 위해 사전 제거 등 조치	1. ---------- 버팀목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21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관리청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의 일부를 법 제24조에 의한 산림사업 등록 법인,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1 제6호에 따른 도시림 조성·관리법인,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대행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1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 ---------- 따른 ----------.
제22조 (자료유지)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료유지) ----------. ---------- 따른 ----.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603호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를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따라 보호수 및”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

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주목”을 “버팀목”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이하시장이라한다)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을 “관계법령”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을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기타 그”를 “그 밖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시장은 보호수 및”을 “시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1.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 따라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	5.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다. 그 밖에 ----------
제4조 (조경 시설의 관리) ①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조경 시설의 관리) ①----------제42조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고 지주목 설치	2. ---------- 버팀목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밖에 ----------
제6조 (관리청의 의무) ①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청의 의무) ①--------(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2. 그 밖에 ----------
④관리책임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 관계법령----------
제8조 (보호수의 지정) ①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수형이 미려한 수목, 희귀수목, 대형목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9조 (보호수 관리자의 의무) ①보호수의 관리자(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당해 보호수가 귀중한 자연재산과 양호한 생활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호수가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보호수의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는 보호수를 옮겨 심거나 또는 수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 (보호수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시장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생 략)	<삭 제>
제17조 (녹화지원)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일부와 기념 표지석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제17조 (녹화지원) ①---------- 어느 하나---------- ---------- ---------- ---------- ----------. ---------- 제42조에 따른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출향 인사·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등 독지가가 고향사랑 정신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나무를 직접 또는 위탁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 장소 및 수종 선택 등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 ---------- ---------- ---------- ---------- ----------.

제18조 (녹화장려) ①·② (생 략)	제18조 (녹화장려) ①·② (현행과 같음)
③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기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
제21조 (조경시설물 관리대장) ①시장은 보호수 및 조경시설 등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조경시설물 관리대장) ①시장은 ----------.
②조경시설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제49조에 따른 ----------.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시행규칙) ------- 시행에 ----------.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604호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회의) ①·② (생 략) <신 설>	제30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605호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21호 및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22. 진주시와 공군 교육사령부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진주시 소재 군부대 장병

제6조제2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

4. 두 자녀 이상의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족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5.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 협약에 따른 산청군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요금의 감면)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요금의 감면) ① ---------- ---------- ---------- ----------.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14.「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신 설>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신 설>	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신 설>	1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신 설>	1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신 설>	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5.·16. (생 략)	20.·21. (현행 제15호 및 제16호와 같음)
17. (생 략)	23. (현행 제17호와 같음)
<신 설>	22. 진주시와 공군 교육사령부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진주시 소재 군부대 장병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의 100분의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경상남도에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미만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
<신 설>	4. 두 자녀 이상의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족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신 설>	5.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 협약에 따른 산청군민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잉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606호

진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의 종합계획에 따라 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 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4.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장) 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한 시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9조(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 치매관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문한다.

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대한 사항
3. 유관기관·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
4. 지역사회 단체 및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
2.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 극복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교육, 홍보 등에 필요한 기념품이나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 기관 및 홍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진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607호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5호로 한다.

제3조 제3항 중 “해가 지는 시각”을 “오후 6시”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람료 반환) ①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판매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판매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반환은 당일 매표마감 시까지로 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만7세 이상 만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2.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3.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군인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을 말한다.	<삭 제>
4. “어른”이란 어린이·청소년 및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삭 제>
5. “단체”란 30명 이상의 사람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6. ~ 10. (생 략)	1. ~ 5. (현행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3조(개방시간) ①·② (생 략)	제3조(개방시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성안의 시설물 중 촉석루,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창렬사에 대한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해가 지는 시각까지로 한다.	③---------- 오후 6시----------.
<신 설>	제4조의2(관람료 반환) ①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판매기관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판매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 반환은 당일 매표마감 시까지로 한정한다.

제5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 및 그 수행원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증서소지자(다만,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보호자 1명을 추가한다)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공무수행과 학술탐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7. 만6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8. 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 9. 시 소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사람) 10. 진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 11. 문화행사, 공연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진주시민이 아닌 사람 12. 성안의 사찰이나 시설에 근무 등을 위하여 항상 출입하는 사람 13.「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1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차상위 계층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호이동 2016. 12. 21.>	제5조(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 2.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도시는 별표 2와 같다. [조 제목 변경 2015. 3. 4]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개정 2020. 7. 8.>

관람요금표 (제4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원)		비 고
	개인	단체 (30인 이상)	
어른	2,000	1,400	19세 이상 ~ 65세 미만
청소년	1,000	600	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인			하사 이하 현역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어린이	600	400	7세 이상 ~ 12세 이하

[별표 2] <신설 2020. 7. 8.>

관람료 감면 (제5조제1항 관련)

【 관람료 면제 】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3. 65세 이상 노인
4.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활동 보조자 1명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4.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며 관람료 1회로 한정한다.
15.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 연간 봉사
    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16.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진주시 명예시민과 그 배우자
17. 「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18.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19. 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
20. 시 소재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사람)
21. 진주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
22. 문화행사 공연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진주시민이 아닌 사람
23. 성안의 사찰이나 시설에 근무 등을 위하여 항상 출입하는 사람
24.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25.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한복착용자
    (남자: 저고리와 바지, 여자: 저고리와 치마)
26. 진주시 소재 군부대 장병
2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관람료 감경(50%) 】

1.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
2.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경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도시는 별표 3과 같다.
3.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4.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5.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별표 3] <개정 2020. 7. 8.>

관람료 감경 도시(제5조제1항, 별표 2 관련)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시·군·구)
경상남도 사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남해군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광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기도 양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전라남도 여수시		경기도 여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파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북도 충주시	대구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나주시	울산광역시 중구
		전라북도 전주시	부산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경주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상북도 상주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상북도 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조례 제1608호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박물관”을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고, 환불가능 시간은 판매 당일 매표마감 시까지로 한다.

1.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박물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를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하며,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재·역사·박물관 운영·사회교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또는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보관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프로그램 등) ① 시장은 시민과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교육 및 특강, 그 밖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안>

관람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금액 (원)		비 고
	개인	단체 (20인 이상)	
어른	1,000	700	19세 이상 ~ 65세 미만
청소년	700	500	13세 이상 ~ 18세 이하
군인			하사 이하 현역군인,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어린이	500	300	7세 이상 ~ 12세 이하

[별표 2] <신설 2020. 7. 8.>

관람료 감면

(제6조제1항 관련)

【 관람료 면제 】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3. 공무수행과 학술탐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호자 1명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3급 활동 보조자 1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3급 판정자의 활동 보조자 1명
9. 「진주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10.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11.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로 연간 봉사활동
    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사람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따른 지원대상자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 제시자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와 그 유 · 가족 중 등록증 제시자
17.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과 그 배우자
18. 「진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가족
19.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로서 선거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며
    관람료 1회로 한정한다.
2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감경(50%) 】

1. 그린카드를 제시한 사람
2.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경 받을 수 있으며, 해당도시는 별표 3과 같다.
3.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등 감면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가족단위 관람객
4.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경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5.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6. 진주와 산청 상생발전 업무협약에 따른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별표 3] <개정 2020. 7. 8.>

관람료 감경 도시(제6조제1항, 별표 2관련)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시·군·구)
경상남도 사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강원도 원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상남도 남해군	충청남도 아산시	경기도 광주시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경상북도 안동시	경기도 양주시	충청북도 진천군
전라남도 여수시		경기도 여주시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파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전라남도 광양시		충청남도 공주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고흥군		충청북도 청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전라남도 보성군		충청북도 충주시	대구광역시 동구
		전라남도 나주시	울산광역시 중구
		전라북도 전주시	부산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경주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상북도 상주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상북도 영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재로서 수집 또는 임시 보관, 대여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3.“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4.“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5.“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군인과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말한다.	<삭 제>
6.“어른”이란 어린이, 청소년 및 군인을 제외한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삭 제>
7.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을 말한다.	<삭 제>
제5조(관람료) 박물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 ① ---------- 따른 ----------.
<신 설>	② 징수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고, 환불가능 시간은 판매 당일 매표마감 시까지로 한다. 1.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박물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제6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3. 공무수행과 학술탐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4.「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5.「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6.「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진주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9. 경남 아이 다누리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10.「진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제17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증 소지자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1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1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 제시자 1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가족 중 등록증 제시자 16.「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 진주시명예시민과 그 배우자 17.「진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18.「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예 따른 투표 참여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다만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 하며 관람료 1회에 한정한다. 1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관람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저탄소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위하여 그린카드 제시자. 2.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 자매도시 3개 시, 동주도시 14개 시, 혁신도시 13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만, 도시가 중복될 경우라도 100분의 5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해당 도시는 별표 2와 같다. 3. 두 자녀 이상 가정. 다만, 감면기간은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당 월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박물관운영위원회)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유물의 수집·전시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박물관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제13조(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박물관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문화재·역사·박물관 운영·사회교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또는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신 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 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록 작성·보관 3. 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 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프로그램 등) ① 시장은 시민과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교육 및 특강 그 밖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박물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규칙) ------ 시행에 ----------.

진주시의회 조례 제2020-2호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

관단체 소속 공직자

2.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에 따른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안건심의 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겸직사실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 후 진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진주시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시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시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 기관·단체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시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진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를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를 한 경우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을 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7.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3장 행동강령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12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 등”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미리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건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시의회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건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4조(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

위

2. 시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시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시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시의회, 시 및 시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시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시 및「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2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

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

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3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등) 의원은 각종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시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시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 시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6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또는 그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2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

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28조제6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 등”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 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

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2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의원 및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33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진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진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절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3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의회 직속으로 진주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강령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 하였음에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39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

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9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41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4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긴급한 자문의 필요가 있는 등 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내용 및 자문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2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3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간사) 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46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 장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8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이 강령의 교육·상담 및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를 관장한다.

②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9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규칙 제761호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을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로 한다.

제2조 중 “조례”를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로, “의해”를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공로조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제2조 (공로조서) 「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 따라 ---------- 따른다.
제3조 (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와 명예시민 메달의 내용 및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 (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①---------- 따른 ---------- 따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②----------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 (사후관리)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한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사후관리) ---------- 따라 ---------- 따라 ---------.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규칙 제762호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시장이”를 “시장이 기업에”로, “지원받은 기업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통보”를 “교부”로 한다.

제18조의2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① 조례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진주시 전략산업 업종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략산업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과 설비의 투자금액(임대 사용불가)이 12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15명) 이상일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③ 투자기업 지원범위는 부지매입비의 경우 분양가의 20퍼센트 이내로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비투자금액은 20퍼센트 이내로 최대 25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와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업에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기업은 신청 당시의 규정 따른다.

[별지 제1호서식] - 개정<2020.7.8.>

[앞 면]

보조금(융자금)신청서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남/여)		
	법인본사 소재지			전화번호
지원내용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업의 구분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특별자원금 추가지원 □ 본점 이전보조금 □ 임차료지원 보조금 □ 기타(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창업기업	
투자사업지 유형	입지 유형		입주 유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매입 □ 임차	
투자사업장 유형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유치 및 투자일정	법인성립일	(최초)공장등록일	MOU 체결일	보조금 접수일(기업→진주시)
	'00.00.00	'00.00.00	'00.00.00	'00.00.00
	토지매입(임차)계약 체결일	착공(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총투자기간(3년 이내) (착공~투자완료)
	'00.00.00	'00.00.00	'00.00.00	00년 00개월
사업장의 내용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존사업장			㎡	㎡
			㎡	㎡
			㎡	㎡
투자사업장			㎡	㎡
업종	업종명		분류번호 (KSIC 5단위)	생산품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명 (남: 여:)	명 (남: 여:)	명 (남: 여:)	
투자금액	총 투자금액 (A=B+C)	토지 매입가액 (B)	설비투자금액(C=D+E)	
			건설투자비용+기계장비구입 비용(D)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뒷 면]

보조(융자)금액	보조금(융자금) 총액	도비 분담금	시 · 군비 분담금
	계 천원	계 천원	계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OO 보조금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산출식		
	OO 보조금		
	OO 보조금		
	OO 보조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 있음 □ 없음		
지원비율 특례사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p)		
기 지원사항	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	보조금 수령금액	
		총액 천원	
		국비 천원	
		도비 천원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기업투자촉진자구 · 이전 지원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 지원 · 전략산업(중규모)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1. 부지매매계약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2.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별지 5호서식) 6. 기타 사실확인 및 증명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부지매입비 융자금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별지 5호서식) 6. 기타 사실확인 및 증명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 개정<2020.7.8.>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남/여)
보조금 (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보조금(융자금) 유형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천원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	천원	보조금(융자금) 명	지원 금액
			천원
			천원

구분		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		남( ), 여( ) 명	남( ), 여( ) 명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남( ), 여( ) 명	남( ), 여( ) 명
신규 고용인원		남( ), 여( ) 명	남( ), 여( )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유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 개정<2020.7.8.>

[앞 면]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		대표자	(남/여)
보조금 (융자금) 유형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착공신고일(계획)		착공신고일(실제)	
투자완료일(계획)		투자완료일(실제)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융자금) 지원 결정시	투자 완료시
투자 금액	부지매입비	천원	천원
	설비투자금	천원	천원
상시고용인원(전체)		명 (남: 여:)	명 (남: 여:)
신규 고용인원		명 (남: 여:)	명 (남: 여:)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남: 여:)	명 (남: 여:)

사업이행여부 평가	☐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유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뒷 면]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1차 지급금액 (B)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미지급금액 (C=A-B)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정산금액 (D)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 비	천원
			시군비	천원
산정 기준				
2차 지급금액 (E=D-B)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집행잔액 (A-(B+E))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OO 보조금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장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표 2] - 개정<2020.7.8.>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 규칙 16조(도외 기업 관내 이전 지원)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10명 이상 20명 미만	1%p
20명 이상 30명 미만	2%p
30명 이상 40명 미만	3%p
40명 이상 50명 미만	4%p
50명 이상	5%p

■ 규칙 제18조(전략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20명 이상 30명 미만	1%p
30명 이상 40명 미만	2%p
40명 이상 50명 미만	3%p
50명 이상 60명 미만	4%p
60명 이상	5%p

■ 규칙 제19조(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비율
30명 이상 40명 미만	1%p
40명 이상 50명 미만	2%p
50명 이상 60명 미만	3%p
70명 이상 80명 미만	4%p
80명 이상	5%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사후관리기간”이란 시장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17. ---------- 시장이 기업에 ---------- 교부----------.
<신 설>	제18조의2(성장 투자기업 촉진지원) ① 조례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진주시 전략산업 업종은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은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략산업 투자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부지매입과 설비의 투자금액(임대 사용불가)이 120억원 이상이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명(창업기업의 경우 투자완료일 이전 1년간 평균 상시고용인원으로 산정하여 15명) 이상일 것 2.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③ 투자기업 지원범위는 부지매입비의 경우 분양가의 20퍼센트 이내로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비투자금액은 20퍼센트 이내로 최대 25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신 설>	제22조의2(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와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기업에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규칙 제763호

진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주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식품제조・가공업이란”을 ““식품제조・가공업”이란”으로, “영업”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을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을 말한다.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식품소분·판매업”을 “식품소분업”으로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이 고시하는 중앙상권활성화 구역

제4조의 제목 “(시설기준 특례)”를 “(시설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기준 특례는”을 “시설기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별표 3”을 “별표 5”로 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제3조제2호가목 : 별표 2.
   나. 제3조제2호나목·다목 : 별표 3.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 별표 4.

제5조의 제목 “(등록 및 신고조건)”을 “(영업등록 및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3조제2호가목·다목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와 영업자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6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진주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제1호, 제3조제4호다목, 제3조제4호라목은 제외한다.
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종전의 제6조) 중 “제3조제2호 및 제3호”를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로, “한시적으로 영업”을 “영업”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2를 별표 4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표 5로 하고, 별표 5의 제목 중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별표 6을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신설 2020.7.8.>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제4조제2호가목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다만,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식품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나. 기계·기구류 등을 설치하여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시설 등을 갖추어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각 시설과 구분(선·줄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되어야 한다.

다. 제조·가공 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라.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시장 내에서는 바닥 설치 시 청소가 용이한 내수처리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세척수 등을 보관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배수구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 쥐, 바퀴, 벌레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장은 전통시장 안에 위치하거나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미터범위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이동판매시설

가. 이동판매대는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작업장으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 등 보관기준에 따라 진열·판매 되어야 하고,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다.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수돗물 등의 사용량이 많은 식품은 오수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취사시설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마. 작업장에서 이동판매대까지 식품을 보관기준에 적합하게 위생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 냉매를 이용하여 온도를 유지시키는 경우는 가능하나, 얼음 사용은 불가하다.

바. 이동판매대의 잘 보이는 곳에는 이동판매대 로고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동판매대 로고 **(210㎜×297㎜)**	신고번호 **제 호** **영업기간: ○.○.○. 부터 ○.○.○까지** **진 주 시 장**

6.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공중화장실 또는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20. 7. 8.>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제4조제2호나목·다목 관련)

1. 작업장 등

가. 작업장은 축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나. 건물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 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에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구분 하도록 한다.

라. 작업장은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바.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 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

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살균·소독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작업장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질기준에 적합한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진열· 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여 진열·판매할 경우 제외한다.

5.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어야 한다.

［별표 4］<개정 2020. 7. 8.>

식품소분업 시설기준(제4조제3호 관련)

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식품소분업의 소분실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중 나. 작업장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2.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화장실

가. 화장실은 작업장 및 판매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공동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개정 2020. 7. 8.>

식품접객업 시설기준(제4조제4호 관련)

1. 영업장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가.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나.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세척시설·폐기물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라.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제과점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마.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 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등의 살균·소

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적으로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공동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6] <신설 2020. 7. 8.>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원재료

가.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는 사용을 금지한다.

나. 냉장식품을 보관하는 경우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냉매를 사용한다.

※ 얼음은 녹아서 식재료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한다.

2. 조리식품

가. 식품은 뚜껑 있는 위생용기에 보관하여 외부공기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즉시 소비가 가능한 양만큼만 조리하며, 덜어 먹을 수 있는 개인 용기를 비치한다.

다. 가열 보관 식품은 항상 60℃이상 유지하며, 재활용 유지(油脂)는 사용을 금지한다.

라. 해산물 등은 내장 제거 후 수돗물(또는 먹는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 사용한다.

3. 음용수

가. 물은 반드시 수돗물(또는 먹는 물)을 사용하되 1회 사용한 물은 재사용을 금지한다.

나. 음용수를 담아 놓는 용기는 자주 세척·소독(1일 1회 이상)한다.

4. 기구용기

가. 칼·도마·행주·컵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세척·소독한다.

나. 전(前)처리용(해산물 등), 조리식품용 조리기구(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며 오염될 경우 수시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기, 손 상처 등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반드시 사용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 식품제조·가공업----------.
2. 식품소분·판매업이란 영 제21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의 2), 6)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
<신 설>	3.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식품소분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
4. 축제란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5. 특정장소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장소를 말한다.	5.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전시시설이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6.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7. 건설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다.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이 고시하는 중앙상권활성화 구역
2.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 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 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수 ·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	3. 식품소분업 ----------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시설기준) ---------- 시설기준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제3조제2호가목 : 별표 2. 나. 제3조제2호나목·다목 : 별표 3.
<신 설>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 별표 4.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	4. ---------- 별표 5.
제5조(등록 및 신고조건)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5조(영업등록 및 신고 등) ① 제3조제2호가목·다목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상인회 및 상권관리기구와 영업자간에 협약한 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신 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6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신 설>	제7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진주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제1호, 제3조제4호다목, 제3조제4호라목은 제외한다. 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건축법」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 ---------- ---------- ---------- 영업---------- ----------.
제7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규칙 제764호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진 주 시 장 조 규 익

2020년 7월 8일

진주시 규칙 제765호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를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을 “각 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보호수·녹지대”를 “녹지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3. 녹지대(조경지)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조경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건축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축물

별지 제6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 주 시 공 보

제683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 시행에 ----------.
제3조 (보호수 지정기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령 100년 이상의 수목·희귀목중 수형 및 수간의 모양이 아름다운 건강한 수목 2. 고사·전설·설화 등이 담겨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 3. 기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 (생 략)	<삭 제>
제4조 (보호수 지정 고시 등)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수 지정 고시는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며, 고시 내용과 보호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번호 2. 수목의 소재지 3. 보호구역 면적(수관폭 면적) 4.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성명 5. 수종·수령·수고·흉고직경(수형목은 수관직경) 6. 지정 연월일 및 지정기관 7. 지정사유 ②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보호수 주변에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 (보호수 보호·관리)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6조제4항 및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호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강우 등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복토하여야 한다. 다만, 뿌리가 노출되어 수피가 형성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절단된 가지 부분은 평활하게 정리하고 살균·방부제 등을 도포한다. 3. 수관부의 박피 부분에는 살균·방부제를 도포한다. 4. 수간 외부의 병·해충은 병·해충명을 규명하여 약제를 살포 구제하여야 하며, 수간안의 경우에는 충공에 살균·살충제를 넣고 진흙으로 밀폐한다. 5. 수간에 동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썩은 부위를 제거한 후 살충·살균·방역·방멸 처리하고 충진재로 채우며, 동공부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인공수피를 붙인다. 6. 줄기 또는 가지에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지주와 나무 사이에 보입을 하여야 한다. 7. 수세의 유지 및 생장촉진을 위하여 적기에 시비·제초·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호수 보호구역 안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성토·상하수도시설·도로시설·건축 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상 상하수도·도로시설 및 건축 등의 사업 시에는 보호수 관리청과 협의, 사전에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돌을 쌓을 경우에는 수관폭 밖에 자연석으로 쌓아야 하며, 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도 수관폭 반경 2분의 1 밖으로 쌓아야 한다. 3. 보호수 수관폭 밑에 있는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제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분과 공기 유통을 위한 투수공을 설치하도록 하되 최소한 수관 투영면적의 1할 이상의 투수공을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4.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할 우려가 있는 보호수는 수목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여야 한다. 5. 도시계획사업 구역안에 보호수가 생립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보호수는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공원 등에 이식하도록 한다. 다만, 시장이 이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하며, 이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③시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생육 환경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 (보호수 지정해제) 시장은 보호수가 보호수로서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해제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제 연월일 및 해제 사유를 관리책임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생 략)	<삭 제>
제18조 (갱신) 교통사고, 인위적 또는 병·충해의 피해를 입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로수는 가로 미관을 고려하여 우선 제거하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적기에 식재 하여야 한다. 1. 고사된 가로수 2. 나무껍질이 크게 손상되고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3. 나무가 기울어지거나 줄기가 썩어 넘어질 경우 사람·건물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로수 4. 교통사고, 풍수해 등의 피해를 입어 생육 전망이 없는 가로수 (생 략)	<삭 제>
제19조 (녹화 지원 대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녹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5. 기타 주민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녹화사업으로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제19조 (녹화 지원 대상)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20조 (녹화 지원 신청 등) ①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통·반 이상의 마을 단위)는 동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녹화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녹화 지원 신청 등) ① ----- 각 호에 따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녹화사업장에의 주민 등 참여) ① (생략)	제21조 (녹화사업장에의 주민 등 참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②제1항에 따른 ----------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3. 그 밖에 -------.
제22조 (대장등의 작성·비치) ①시장은 보호수·녹지대(조경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대장등의 작성·비치) ①---- 녹지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
1. 보호수 지정관리대장(별지제6호서식)	<삭 제>
2. 삭 제	
3. 녹지대(조경지) 관리대장(별지제8호서식)	3. 녹지대(조경지)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4. 조경시설물 관리대장(별지제9호서식)-「건축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건축물	4. 조경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건축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축물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④---------- 지체 없이----------.

진주시의회 규칙 제2020-1호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국장) 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및 직렬은 별표1과 같다.
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 (사무분장) 사무국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위원 직급 및 직렬(제3조 관련)

위원회명	직위	직급 및 직렬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주사**
기획문화위원회	**기획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별표 2]

세 부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의회사무국	(의정 분야)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2. 문서, 보안 및 관인 관리 3. 예산회계 및 물품 수급 관리 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6. 전체의원 국·내외연수, 교육, 간담회, 견학에 관한 사항 7. 의장 회의, 수행,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사항 8.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 9. 의회 청사 시설물 관리 10. 의회 경비 및 참관에 관한 사항 11. 공용차량 관리 및 운전 12. 의정 자료실, 의원연구실 관리 13.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사 분야) 14. 회기 운영계획 수립 15.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 및 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 16. 상임위원회 견학, 간담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사항 17. 의안 접수, 배부, 보존 관리 18.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9. 의정활동 참고자료 조사, 취합 20.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21. 청원, 진정의 접수 및 처리 22. 의정 보고서, 의정 백서 발간 (의정홍보 분야) 23. 의회 활동 홍보계획 수립 24.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25. 의회 홍보자료 발간 26. 의회 홈페이지 관리 27. 음향 장비 운영관리 28. 기록보존 사진 촬영 29. 생중계시스템 운영 30. 의회 견학 및 방문 안내